



**근로감독관이
사업장 나가면
✓ 꼭 확인한다는 그 것!**

③ 최저임금

최저임금 is 기본



2022년 최저임금이
얼마죠?

✓ **시급은?**



9,160원!

✓ **월급은?**



1,914,440원!

주 40시간&주휴시간 포함, 월 209시간(고시기준)



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
2천만 원 이하 벌금

Q1. 질문있어요!!

월급이 1,914,440원
이상이면 최저임금을
준수한 건가요?

그렇지만은 않습니다.
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
따져봐야 합니다!
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?



소정근로에 따른 임금
(기본급 등)



상여금은 최저임금
월환산액의 10% 초과분
(’22년 기준)

*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합니다.



복리후생비(식비, 교통비 등)는
최저임금 월 환산액 2%
초과분(’22년 기준)

*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Q2. 질문있어요!!

저는 1주 40시간 일하는데
월 200만 원을 받습니다.
최저임금을 준수한
금액 맞나요?

기본급	170만 원
식대	10만 원
교통비	10만 원
시간 외 수당	10만 원
합계	200만 원
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

기본급	170만 원
*식대·교통비	161,712원
합계	1,861,712원

*식대·교통비 20만 원 중 월 환산액 1,914,440원의
2%인 38,288원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('22년 기준)

 최저임금에
포함되는 임금

1,861,712원

 최저임금
적용 기준 시간

÷

209시간

=

8,907원

<

'22년 최저임금

9,160원
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시
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!

**최저임금
위반!**

4대 기초노동질서
현장예방점검의날

꼭 지키자~! 최저임금



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
최저임금 제대로 주고 받고
있나 확인해보기

바로가기 

[https://www.moel.go.kr/
miniWageMain.do](https://www.moel.go.kr/miniWageMain.do)